

<p>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3호중 “제96조”를 “제123조”로 한다.</p> <p>제3조제1항제1호중 “지하철건설본부” 다음에 “청소사업본부”를 삽입하고, 동조동항중 “제 3호”를 “제4호”로, “제2호”를 “제3호”로 하 며, “제2호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2. 시의회사무처 : 사무처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○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서 울特別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 따른市稅不均一課稅 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議겠습니다.</p> <p>同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 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趙熙濬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趙熙濬委員 趵熙濬委員입니다.</p> <p>本委員은 議案番號 第925號 檢印契約書制度實 施에 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附則 第1項 施行日을 修正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, 附則 第2項이 改正 前 規定을 계속 適用해야 하는 内容으로서, 소위 規定을 알고 申告書 날짜를 적당히 記載하여 申告하는 경우에는 改正을 하나마나한 内容이라 는 중대한 矛盾點이 있다는 것을 指摘하면서, 이를 명백한 内容으로 修正動議하고자 합니다.</p> <p>修正하고자 하는 内容은 修正案 附則 第1 項 中 “1994年 1月 1일부터”를 “公布한 날 로부터”로 修正하고, 上程한 附則 第2項 中 “取得하였거나 登記申請을 한 경우에는”을 “이미 取得하여 檢印申請한 契約書에 의한 取得稅와 이미 登記申請한 契約書에 의한 登 錄稅”으로 修正토록 動議합니다.</p> <p>이상입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聲九 趵熙濬委員의 修正動議에 대 해서 再請 있으십니까?</p> <p>(再請합니다)하는 委員 있음)</p> <p>.....</p> <p>12. 서울特別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 따른市稅</p>	<p>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修正動議案(趙熙濬議員 發議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14時 10分)</p> <p>再請이 있으므로 趵熙濬委員의 修正動議는 正式議題로 成立되었습니다.</p> <p>그러면 趵委員의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議決 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異議 없으시면 서울特別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 에 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修正案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증개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 정한다.</p> <p>부칙 제1항중 “1994년 1월 1일부터”를 “공포한 날부터”로, 부칙 제2항중 “취득하였 거나,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”을 “이미 취 득하여 검인신청한 계약서에 의한 취득세와 이미 등기신청한 계약서에 의한 등록세”으 로 수정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시세불균일과 세에 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중 “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의 시행에”를 “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”으로 한다.</p> <p>제2조중 “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”을 “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”으로 한다.</p> <p>제3조중 “100분의 40”을 “100분의 30”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.</p> <p>② (적용예)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이미 취득 하여 검인신청한 계약서에 의한 취득세와 이미 등기신청한 계약서에 의한 등록세는</p>
--	---